

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경미한변경)인가 고시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421호(2013.12.12.)로 최초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421호(2013.12.7.)로 천호뉴타운3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81호(2014.7.31.)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결정 의제 고시된 다음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8-118호(2018.7.25.)로 사업시행계획인가, 강동구 고시 제2020-194호(2020.12.16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강동구 고시 제2023-133호(2023.8.9.)로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촉진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(경미한변경) 하고 같은 법 제7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.

2023년 9월 27일

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
가. 종 류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나. 명 칭: 천호재정비촉진지구 천호3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
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
가. 위 치: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23-76 일대

나. 면 적: 23,083.7㎡
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
가. 성 명: 천호3촉진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이봉수)

나. 주 소: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88, 3층(천호동, 강동빌딩)

4. 관리처분계획인가일: (최초)2020. 12. 8.

5. 경미한변경내용: 오기 정정(84A1, 84A2 동호수배치 오기정정)

6. 관계도서는 생략하며 일반인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재건축재개발과 (☎02-3425-5985) 및 천호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(☎02-471-9117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